

의안번호	2217050
의 퇴 인	박상혁의원
회 답 일	2026.5.12.
추계번호	26D1137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억 8,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01억 7,400만원(연평균 40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4,085	3,967	4,003	4,040	4,079	20,174	4,035

주: 본 추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국무총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지원하고,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통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및 소관 규제특례 주관기관 지정 2.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승인 건에 대한 관리·점검 3.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및 서비스·제품 상용화 등에 대한 관리·점검 4. 제17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건에 대한 자료 수집 6. 제6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기획·공모하는 규제특례 안건의 발굴 7.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8. 그 밖에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안 제5조(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개별규제특례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함	의무규정
3	안 제17조(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조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¹⁾ 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함)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규제특례 부여 여부에 이의가 있어 해당 신청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른 조건 부과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특례를 받은 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함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정을 신청한 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개별규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	-

1)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안 제5조(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미대상)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8개의 법률을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또한 8개의 같은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제특례 관계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제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별 규제특례위원회에 대하여는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u>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u>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u>"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u>규제 특례 관계법률</u>"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미첨부)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8개의 규제특례 관계법률 외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3	안 제17조(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조정)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안 제4조)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17조)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상근 직원(10명)의 보수,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센터의 운영비를 합산하여 추계함
 - 센터 상근직원의 보수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2025년 기준 상근직원 수와 보수액을 참고하여 추정함
 - 센터장(1명): 113,292천원(월 9,441천원×12개월×1명)
 - 연구원(9명): 692,280천원(월 6,410천원×12개월×9명)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임차비용, 실증사업지원비용, 기타 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는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규제혁신추진단 임대현황

구분	지역	임차면적	임차료 등(단위: 천원)			
			임차료		관리비	
			월	연간	월	연간
규제혁신추진단	서울 종로구	1,927㎡	61,729	740,748	33,371	400,452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중 실증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법률자문 및 컨설팅은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3] 규제 특례 부여 실증사업 지원내역

항목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책임보험료 지원	200	▶ 규제 특례 부여를 받은 실증사업에 대해 책임보험료 지원 - 단가 2,000만원 × 10건 = 20,000만원
실증 지원	300	▶ 규제 특례 부여를 받은 실증사업에 대해 실증 지원 - 단가 3,000만원 × 10건 = 30,000만원 * 최대 300백만원 이내에서 사업 따라 유연하게 지원
법률자문 및 컨설팅	200	▶ 규제 특례 부여 신청사업에 대한 규제 유예 방법 등 법률 자문 - 최대 200백만원 이내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그 밖의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정함

[표 4] 기타 운영비용 내역(추정)

항 목	금액(백만원)	상 세 내 역
전문가 활용비	120	▶ 과제검토 사례비 : 20인 × 30만원 × 20회 = 12,000만원 * 이해관계자 갈등, 부처간 이견 과제 등 검토 → 조정필요과제 선정
위탁연구비	500	▶ 위탁연구용역(300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 단가 5,000만원 × 6회 ▶ 위탁연구용역(200백만원) - top-down 과제, 다부처 규제 과제 등 과제 발굴·연구 단가 5,000만원 × 4회
교육비	15	▶ 규제샌드박스 부처 담당자 교육 + 기업 등 민간인 대상 교육 + 전문가 초빙 샌드박스 교육 등 단가 150만원 × 10회
실태조사	200	▶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조사 + 만족도 조사 등 단가 10,000만원 × 2회
출장비	40	▶ 국내출장 : 10인 × 10만원 × 20회 ▶ 국외출장 : 2인 × 2회 × 500만원* * 국외 규제샌드박스 운영 사례 등 조사
사무용품비	10	▶ 노트북 등 임차 : 임차료 100만원 × 3종 ▶ 사무용품비 등 : 700만원
수용비 (인쇄비 등)	80	▶ 인쇄비, 자료복사비, 매뉴얼 및 우수사례 발간 등: 8,000만원 *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 이슈보고서 등
홈페이지 구축·운영	100	▶ 홈페이지 구축(2027년) ▶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 관리(2028년 이후, 위탁용역 85,000천원)
합계	1,065	▶ 2027년: 10억 6,500만원 ▶ 2028년 이후: 매년 10억 5,0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나, 개정안에 의해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가 추가로 실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추가 실시되는 회의 관련 각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²⁾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므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위원 수를 30명으로 가정함
- 분과위원회³⁾ 및 전문위원회⁴⁾ 민간위원은 각각 30명, 20명으로 가정함
- 위원회 회의 추가 개최횟수는 본위원회 연 1회, 분과위원회 연 4회, 전문위원회 연 6회로 하고,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⁵⁾을 참고하여 30만원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단가⁶⁾를 각각 적용함

- 2)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3.3.>
 ④ 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5)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1일당 200,000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6)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전망(2026.3.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3	3.3	3.3	3.3	3.3	3.3
공공기관 신규채용 기관부담 요율(%)	11.436	11.749	12.064	12.405	12.749	13.0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4조)

1) 보수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신설되는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직원 보수는 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2025년 기준 상근직원 수와 보수액을 참조하여 추계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 2025년 기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원 보수액은 다음과 같음

[표 5]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센터장과 연구원 1인당 연 보수액: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센터장	연구원
보수액	113,292	76,920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억 6,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5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센터장	121	125	129	133	138	646
연구원 (9명)	739	763	788	814	841	3,945
보수 합계	860	888	917	947	979	4,591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관부담금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기관부담금은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관부담금	101	107	114	121	128	5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자산취득비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의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⁷⁾를 적용하여 추계하며, 추계 첫해인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71	-	-	-	-	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운영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임차비용(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실증사업 지원 비용, 기타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7) 2027년 기준 공공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는 7,129천원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9억 7,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45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임차 비용	보증금	66	-	-	-	-	66
	임차료	741	741	741	741	741	3,705
	관리비	400	400	400	400	400	2,000
	소계	1,207	1,141	1,141	1,141	1,141	5,771
실증 사업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실증 지원	300	300	300	300	300	1,500
	법률 컨설팅	200	200	200	200	200	1,000
	소계	700	700	700	700	700	3,500
기타 운영 비용	전문가 활용 등	765	765	765	765	765	3,825
	실태조사	200	200	200	200	200	1,000
	홈페이지 구축운영	100	85	85	85	85	440
	소계	1,065	1,050	1,050	1,050	1,050	5,265
합계		2,972	2,891	2,891	2,891	2,891	14,536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억 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97억 6,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규제특례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4조)	보수	860	888	917	947	979	4,591
	기관부담금	101	107	114	121	128	571
	자산취득비	71	-	-	-	-	71
	운영비	2,972	2,891	2,891	2,891	2,891	14,536
	합계	4,004	3,886	3,922	3,959	3,998	19,7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17조)

□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 수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위원 30명, 회의 추가 개최횟수 연 1회
-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총 30명, 회의 추가 개최횟수 연 4회
-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총 20명, 회의 추가 개최횟수 연 6회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규제합리화 위원회	민간위원	30	30	30	30	30	—
	회의횟수	1	1	1	1	1	—
	회의참석수당	0.30	0.30	0.30	0.30	0.30	—
	소계	9	9	9	9	9	45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30	30	30	30	30	—
	회의횟수	4	4	4	4	4	—
	회의참석수당	0.30	0.30	0.30	0.30	0.30	—
	소계	36	36	36	36	36	180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20	20	20	20	20	—
	회의횟수	6	6	6	6	6	—
	회의참석수당	0.30	0.30	0.30	0.30	0.30	—
	소계	36	36	36	36	36	180
합 계		81	81	81	81	81	4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억 8,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01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4조)	4,004	3,886	3,922	3,959	3,998	19,769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조정(안 제17조)	81	81	81	81	81	405
합계	4,085	3,967	4,003	4,040	4,079	20,1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